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가나설비 (임*빈)	가스·난방공사업 (인천서구2016-24-02)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42번길 1, 101호(석남동)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등록말소

2. 공고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4. 8. 8. ~ 2024. 8. 23.

4.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하였습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